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안건지

차수	22차 정기
일시	18. 07. 09 18 : 00
장소	총학생회실

참석확인 (8/13)

간호	경경	공대	사범	사과	약학	예술	인문	의학	자연	동연	부총	총
	○	○	○	○	○	○	○			○	○	○

□ 보고 안건

1. 2018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

: 완료.

2. 단위요구안 현황

: 피치 못할 담당 부서 내 사정으로 현 취합과정에 있는 단위요구안 회신이 늦어지고 있음. 업무 대리, 단위요구안 회신 등 지속 요구할 것.

□ 논의 안건

1. 2005 반성폭력 회칙 개정 초안

: '명명', '회칙의 위계'에 대한 논의 진행.

'회칙의 존재 목적이 현 (총)학생회칙과 상이한 점, 2005 반성폭력 회칙 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기존 내용의 다수가 세칙 수준인 점, 기존 반폭회칙이 (총)학생회칙에 독립적으로 2005년 전학대회에서 학생회칙의 위계로 의결된 회칙인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 찬성에 의해 명명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앙대 학생회칙'으로 동일 진행, 위계는 '학생회칙'으로 두는 것으로 결정.

-경영경제대학

1) 단어, 문장 수정 요망 내용에 대한 피드백.

: 1장 2조 (대상) 해설의 '해결하기' 부분 문장.

: 5조 1항 해설의 첫째 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침해되었을 경우~' 문장과 해당 문단 마지막 문장.

: 6조 1항 1번의 '합당한 사유를 밝히고~' 문장.

: 6조 2항 '해태'는 법률단어로서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다 쉬운 단어로 변경 요망.

: 담당자와 관련한 내용 역시 세부적인 명기 요망.

: 7조 3항 4, 학생회장'단'으로 교정 요망.

: 11조 2항 토론과 평가, '인습적 금기' 단어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 조금 풀어서 쓰더라도 쉬운 단어로 변경 요망.

2) 조와 항의 범위, 내용 관련 피드백

: 6조 6조와 6조 1항이 나뉜 부분에서 1항의 범위가 더 크다고 생각. 수정 논의 필요.

: 8조 1항 권리 부분, '보편적 권리' 내용을 삭제하고 조항 바로 뒤로 붙이는 것이 어떠한지? '보편적 권리'내용이 이하에 모두 있으므로 없어도 될 것.

: 8조 3항, 대리인을 제외하고 해당 항의 제목에 맞는 내용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등으로 축약하는 것이 좋을 것. (인문대학: 부담, 고통을 줄일 권리 등 기존과 비슷한 명시가 좋다고 생각.)

-사회과학대학

1) 형식 관련 피드백

: '제'와 '숫자'를 붙일 것, 말줄임 이전 '이하~'라는 서술 필요. 항/조 옆 괄호 서술 없는 부분 수정 필요.
(총학생회: 초안이 완성될 시점, 관련 자문을 받아 포맷 수정하여 8월 20일 마무리할 것.

2) 내용 관련 피드백

: 학생단체 등에서 공동체의 판단을 공식 기관의 판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음. 현 성폭력 회칙 개정 초안 제시안에는 공동체가 상위 기관에 의존하며 결론이 미확정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보임.

: 5조 성적 자기결정권 해설에서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표현된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

: 6조 3항 사적폭력 부분 해설 필요.

: 7조 3항 4-1 '집단적 논의'의 의미 모호. 추가 설명 필요.

: 8조 3항 가해당사자의 권리 부분 해설 요망.

: 11조 2항 민주적 해결에 대한 해설 요망.

: 7조 1항과 2항, 피해 당사자와 가해 당사자 권리 조항의 차이가 현격. 수정 요망.

: 8조 1항 4번 도움을 구할 권리, 최종 접수인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 피해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 일 경우 그에 적합한 도움을 구할 권리가 추가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8조 2항 존중받을 권리, 평등의 권리 등의 명명으로 기타 해석의 여지가 넓어지길 바람.

: 8조 3항 가해당사자의 권리, '존중받을 권리' 추가되어야 함.

: 2차 피해와 관련한 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사례 등 조금 더 다양한 사례가 추가되면 좋을 것.

: 방학 중, 학우 전반이 회칙 개정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달라는 요구 있었음.

-동아리연합회

: 8조 2항과 3항,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의 권리 차이 현격. 개선해야 할 것. (인문대학: 가해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명기가 지나치게 상세해진다면 회칙 전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음.)

-총학생회: 1장에 대한 내용적인 피드백 적었으므로 7월 23일 23차 회의에서 2장, 8월 6일 24차 회의에서 3장에 대해 논의할 것. 각 단위에서 주신 피드백 취합하여 개정 초안 제시안 수정 논의 진행예정.

2. 2학기 가을축제 'C:autumn'

: 가을축제 진행단위 →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경영경제대학. 총학생회 가을축제 일정은 9월 18일(화)~20일(목)으로 예정. 세 단과대학, 일정 조율하여 법학관-310관 사이 후문 길 축제 진행 요망. 9월 19일~20일, 동연/총학 정문 무대 설치 예정.

3. 여름방학 중 대표자 대상 성평등교육 → 날짜가안: 8월 27일(월)

: 반성폭력 회칙 개정과 발맞추어, '대표자가 성폭력사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의 주제로 진행할 것. 성평위 기획안 확인 이후 단위별 의견 제출 요망.

□ 기타 안전